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4
----------	-----------

제출일자	2009. 11. 1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거창군세 감면시한(2009.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거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다.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라. 현행 지방세법상(제272조제5항)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또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그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

마.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의2 삭제)

바.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안 제13조·안 제15조의3·안 제15조의4·안 제21조·안 제22조 및 안 제28조)

-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주차장용 부동산(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함(안 제11조).

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함(안 제14조).

- 지방세법 개정('09.2.6)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1천분의 1.5 적용 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 상쇄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감면시한('09년말)이 도래하여 감면을 폐지함(안 제15조의2).

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각 조문에서 삭제하여 제7장 보칙으로 이관·신설함(안 제16조제2항 단서·안 제18조·안 제19조 삭제 및 안 제29조의4 신설).

카. 감면신청과 감면통지에 따른 관련 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과 일치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삭제함(안 제30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삭제).

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표현 등을 논리에 맞게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12조, 제188조, 제196조의5, 제266조, 제273조, 제294조, 제29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15조
- 그 밖의 개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27. ~ 11.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로, “군세”를 “거창군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그 유족”을 “그 유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으로, “그 중상이상자”를 “그 중상이자”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을 각각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으로, “자활용사촌안에 거주”를 “자활용사촌에 거주”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및”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치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하 이조”를 “이하 이 조”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직계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으로, “형제, 자매”를 “형제·자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000시시”를 “2천시시”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10인승 이하”를 “10인승 이하인”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제2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여부에”를 “등록 여부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를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소멸, 멸실”을 “소멸·멸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로, “「주민등록법」에 의한”을 “「주민등록법」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000시시”를 “2천시시”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10인승 이하”를 “10인승 이하인”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 여부에”를 “그 등록 여부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소유자에”를 “소유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를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소멸, 멸실”을 “소멸·멸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을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와”로 한다.

제5조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의료법에 의한”을 “「의료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으로,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평생교육법」에 의하여”를 “「평생교육법」에 따라”로, “신고된”을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기본법」에 의한”을 “「교육기본법」에 따른”으로, “설치, 경영”을 “설치·경영”으로, “실험, 실습용”을 “실험·실습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부터 제9조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로, “보호구역안의”를 “보호구역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6조제3항”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6조제3항”으로 하여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택개량”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 사업 계획에 의하여”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로, “당해지역”을 “해당지역”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로,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을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로,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을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로,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를 “제28조의5에 따라”로,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1000분의 1.5을”을 “1천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로, “주택을”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으로, “어느 하나에 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착공후”를 “착공 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로, “지방공단 및”을 “지방공단 또는”으로,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한다.

제19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로,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로,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부동산에”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로,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으로,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함”을 “한정한다”로, “당해 농공단지내의”를 “해당 농공단지 안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수도권안”을 “수도권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114조의2”를 “규칙 제1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세함에 있어서는”을 “과세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5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건축중”을 “건축 중”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경감율”을 “경감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감면받 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거창군세감면 신청서”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을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중 “2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u>군세</u>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u>거창군세</u>-----</p> <p>-----</p> <p>-----</p> <p>-----</p> <p>-----</p> <p>-----</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상자</u>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u>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u>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u>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u>이 소유하는 <u>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u>에 대하여는 <u>재산세 및 도시계획세</u>를 면제한다.</p> <p>②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u>상이등급1급 내지 7급</u> 및 「<u>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u>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u> 및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고엽제후유증환자</u>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u>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u>----- <u>그 중상이자</u>----- <u>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u>----- <u>자활용사촌에 거주</u>----- <u>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u>----- <u>재산세</u>-----.</p> <p>②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 <u>상이등급 1급</u>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 <u>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u>에 해당하는 자 --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고엽제후유의증환자</u>----- (이하 이 조-----)</p>

현 행	개 정 안
<p>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 -----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 한정한다)-----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 각 호의 어느 하나---자동차 중----- ----- 해당 -----</p>
<p>1. (생 략) 가. 배기량 <u>2,000</u>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u>10인승</u>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1. (현행과 같음) 가. --- <u>2천</u>시시 ----- 나. ----- <u>10인승</u> 이하인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p>
<p>2. ~ 4. (생 략)</p>	<p>2.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등록 여부에도-----.</p> <p>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 소멸·멸실 ----- 해당 -----</p> <p>---- 인정하는 ----</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 「주민등록법」에 따른 -----</p> <p>----- (-----</p> <p>----- 한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u>사용하는</u> 자동차로서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u>당해</u>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u>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u> 자동차-----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자동차 중</u> ----- ----- ----- ----- <u>해당</u> ----- ----- ----- ----- ----- -----
1. (생 략) 가. 배기량 <u>2,000cc</u>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u>10인승 이하</u> 승용자동차(「 <u>자동차관리법</u> 」의 <u>규정에 의하여</u>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u>자동차를 제외한다</u> ) 다. 「 <u>자동차관리법</u> 」에 <u>의하여</u>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u>2천cc</u> ----- 나. ----- <u>10인승 이하인</u> ----- ----- (「 <u>자동차관리법</u> 」에 따라 ----- ----- ----- ----- <u>자동차는 제외한다</u> ) 다. 「 <u>자동차관리법</u> 」에 따라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등록 여부에도 -----.</p> <p>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소유자에게 ----- -----.</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 소멸·멸실 ----- 해당 ----- -----</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와 -----.</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 ----- (----- 한정한다)----- ----- 「의료법」에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 ----- 설치·운영하는 ----- ----- ----- -----.</p>
<p>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p>	<p>&lt;삭 제&gt;</p>
<p>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 7. (생 략)</p>	<p>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평생교육법」에 따라 ----- ----- 신고하는 ----- 2. &lt;삭 제&gt; 3. &lt;삭 제&gt; 4. &lt;삭 제&gt;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 6. ~ 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u>실험, 실습용</u>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  <u>설치·경영</u>-----  ----- <u>실험·실습용</u>-----  -----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u>제7조부터 제9조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u>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u>제1호의 규정</u>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u>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지정된 <u>보호구역안의</u> 부동산  ② (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u>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u> -----  -----  2. <u>제1호에</u> -----  -----  -----  -----  3. ----- 「<u>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u>」에 따라 ----- <u>보호구역의</u>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u>법 제266조제3항</u>에서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u>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u>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66조제3항</u> -----  -----  -----  -----  ---.  1. ~ 4.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p> <p>-----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p> <p>----- 해당지역-----</p> <p>-----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p> <p>----- 한정한다)-----</p> <p>----- 해당 -----</p> <p>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p> <p>-----</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p> <p>-----</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부가가치세법」</p> <p>----- 제5조에 따라 -----</p> <p>----- 해당 -----</p> <p>-----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p> <p>-----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p> <p>-----</p> <p>-----</p> <p>-----</p> <p>-----</p> <p>-----</p> <p>-----</p> <p>-----</p> <p>-----</p> <p>-----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 <p>-----</p>

현 행	개 정 안
<p>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 ----- 제13조제2항에 따른 ----- ----- ----- ----- -----.</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 ----- ----- ----- ----- -----.</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 60제곱미터 ----- ----- (해당 ----- ----- ----- -----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 -----.</p>
<p>&lt;신 설&gt;</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 해당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3조제2항에 따른 ----- 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해당 -----</p>

현 행	개 정 안
<p>2. 전용면적 <u>85제곱미터</u>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u>당해</u>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u>복리시설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lt;신 설&gt;</u></p>	<p>2. ----- <u>60제곱미터</u> ----- -----(<u>해당</u> ----- ----- ----- <u>복리시설은 제외한다</u>)----- ----- -----.</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u>해당</u>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u>복리시설은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u>경우를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2조(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6조제1호에 따른 ----- ----- ----- ----- ----- ----- ----- ----- <u>경우는 제외한다</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b>경우를 제외한다</b>)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b>영위하고자 하는</b>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b>경우를 제외한다</b>)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p> <p>-----  <b>경우는 제외한다)</b>-----            -----.</p> <p>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            ----- 제28조의5에 따라 <b>영위 하려는</b> -----            -----  <b>경우는 제외한다)</b>-----            -----.</p>

현 행	개 정 안
<p>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법 제 182조제1항에 따른 ----- ----- -----.</p>
<p>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p>	<p>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 ----- ------(해당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 -----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 ----- 1천분의 1.5를 -----.</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lt;삭 제&gt;</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영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p>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p> $\frac{\text{연간수입금액} = \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  ----- (----- 한정한다)-----  ----- . &lt;단서 삭제&gt;</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 어느 하나에 따라 -----  1. -----  ----- 착공 후 해당 -----  -----  2. -----  ----- 해당 -----  -----</p>

현행	개정안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지방공단 또는 ----- 부동산에 -----</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부동산에 -----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lt;삭 제&gt;</p>
<p>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lt;삭 제&gt;</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 정하는 바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 ----- -----.</p>





현 행	개 정 안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 ----- ----- -----.</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 ----- ----- ----- ----- -----.</p>
<p>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한정한다)----- 해당 농공단지 안의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규칙 제114조의2</u>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규칙 제115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u>과세함에 있어서는</u>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② ----- ----- ----- ----- <u>규칙 제114조의3</u> ----- ----- ----- ----- ----- <u>과세하는 경우에는</u> ----- ----- -----.</p>
<p>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u>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u>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각각 5년간</u>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u>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u> <u>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u> ----- ----- ----- <u>5년간</u> ----- -----.</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u>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u>당해</u>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u>건축중인</u>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 ----- ----- <u>해당</u> ----- ----- <u>건축 중</u> ----- -----</p>
<p>제29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u>당해</u>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제29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u>경감율</u> 적용) ----- ----- ----- <u>해당</u> ----- -----</p>
<p>&lt;신 설&gt;</p>	<p>제29조의4(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3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u>감면받고자</u>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거창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 <u>감면받으려는</u>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u>감면신청서</u> ----- ----- ----- ----- ----- ----- ② --- <u>제1항에</u> 따른 ----- ----- ----- <u>그 내용을</u>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u>이 조례의</u> <u>규정에 의한</u>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u>이 조례에</u> <u>따라</u> ----- ----- ----- -----.</p>
<p>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u>2이상의</u>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 ----- <u>둘 이상의</u> ----- -----.</p>